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가단2040 면책확인
원 고 ○○○
김포시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피 고 ○○○○
청주시
변 론 종 결 2012. 7. 4.
판 결 선 고 2012.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1. 23.자 3,300,000원, 2003. 3. 25.자 30,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 23. 원고에게 같은 해 7. 23.까지 변제받기로 하고서 3,300,000원을 대여하였고, 또한 2003. 3. 25. 같은 해 4. 30.까지 변제받기로 하고서 30,000,000원을 대여(이하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4. 인천지방법원에 2010하단****호로 파산신청을, 2010하면****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4. 13.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1. 4. 28.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11. 18.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2011차*****호로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면책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 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았으나 면책신청 당시 피고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과실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소정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